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- 431호

도시관리계획(인사동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7호(2002.1.29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2009-497호(2009.12.10.)로 결정(변경)된 「인사동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0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0.8.26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29일
서울특별시

I. 결정(변경) 취지

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노후가 심한 종로경찰서 신축을 위하여 중첩된 도시계획시설 면적 등을 제척하고 청사의 신축규모 및 주변여건 등을 반영한 높이를 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결정(변경) 사항임.

II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	종로구 경운동 90-18일대	124,068	-	124,068	서고 제2002-27호 (2002.1.29)	-

2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사항

가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
1)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나.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

1)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조서

□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	시설의 종류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 후		
변경	①	공공 청사	종로 경찰서	종로구 경운동 90-18번지 일대	4,715.4	감)321.0	4,394.4	서고179호 ('80. 5.28.)	-

※ 상기 공공청사 변경 이외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변경없음

☐ 공공청사 건축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	시설명	건축물의 규모					최초 결정일
			건폐율	용적률	높이			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변경	①	종로경찰서	60%이하	600%이하	30m이하	증)4m	34m이하	서고 2009-497호 (2009.12.10.)

☐ 공공청사 결정(변경)조서 및 건축계획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①	공공청사	도시계획시설 면적 변경	·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결정선과 획지계획(고합부지 특별계획구역) 결정선의 중첩 부분 제척 ·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결정선 내 국(경)철도 외 소유자 및 주변 현황에 따른 일부 필지 제척 · 기존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결정선 지정에 있어 오류 사항 정정
		도시계획시설 건축규모(높이) 변경	·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의 규모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높이 변경 (증 4m)

다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: 결정조서(변경없음)

－ 관훈동 85-1(도), 84-15(대) 공공보행통로 결정(결정도면 변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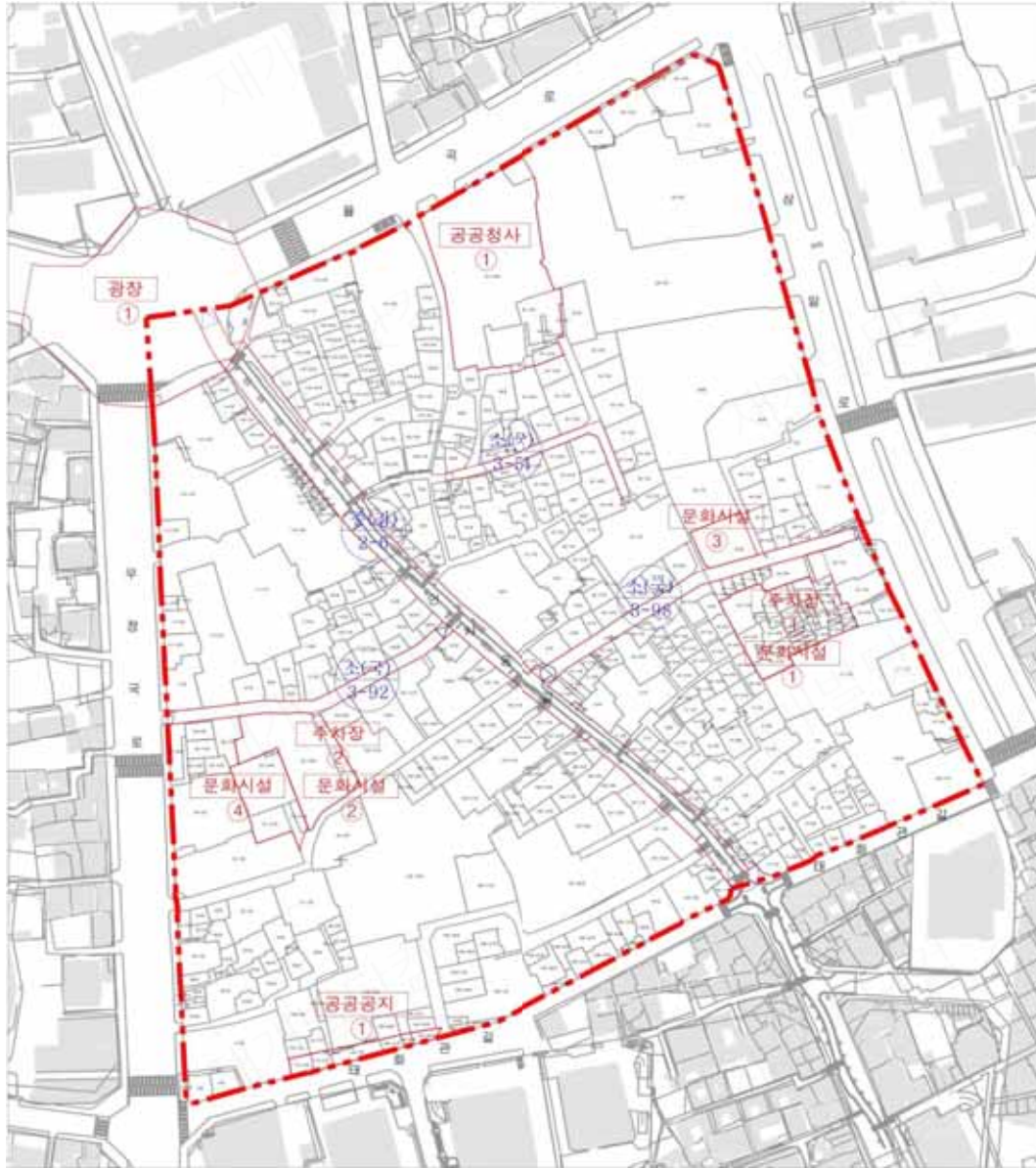
III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(세부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)

※ 첨부된 관계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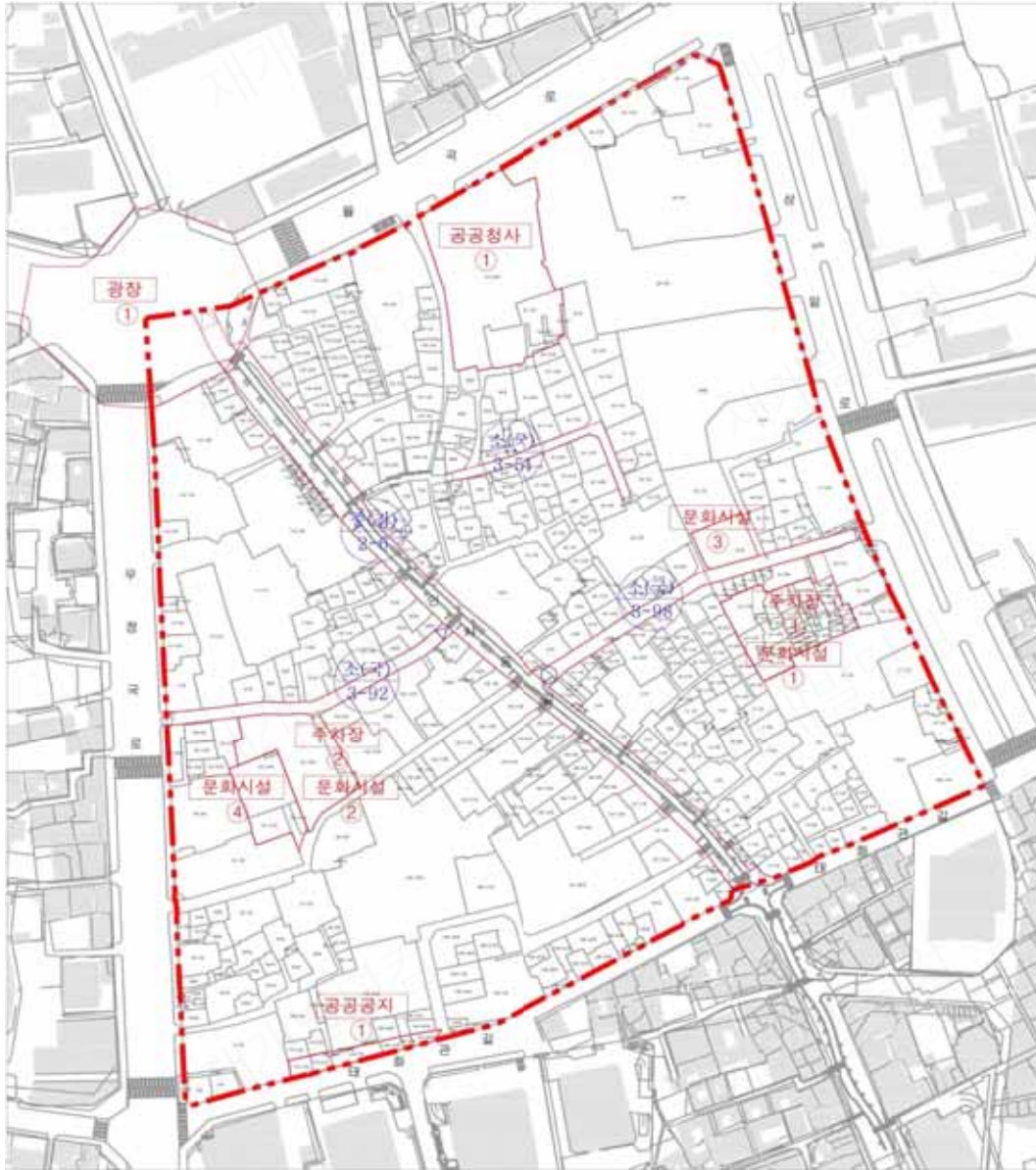
IV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자산과(☎02-2133-5577), 종로구청 건축과 (☎02-2148-2814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 게시 예정
[붙임]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도면

■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(기정)도



■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

범례

- | | |
|----------|------|
| 지구단위계획구역 | 공공공지 |
| 도 로 | 문화시설 |
| 주차장 | 공공청사 |
| 광 장 | |

인사동
지구단위계획

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

scale 1:3,000



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기정)도



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